

제439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정기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9월2일(수)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농촌진흥청 소관
 - 산림청 소관
 - 해양수산부 소관
 - 해양경찰청 소관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해양수산부 소관

상정된 안건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2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농촌진흥청 소관
 - 산림청 소관
 - 해양수산부 소관
 - 해양경찰청 소관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2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해양수산부 소관

(10시06분 개의)

○소위원장 강승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해서 그 결과를 오늘 오후에 예정된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 순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해수부, 해양경찰청순으로 하

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해당 항목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에서 이견 있는 사항 위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시정요구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이견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질의는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다섯 가지 유형으로 시정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의 처리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로 다루기 곤란한 내용으로서 정부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개선 방향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부대의견을 첨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농촌진흥청 소관

다. 산림청 소관

라. 해양수산부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10시08분)

○소위원장 강승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도중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앞에, 책상 위에 두 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정요구현황이 있고 또 하나는 시정요구유형 및 분류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위자료 3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연번 1번 농업협상대응 사업에 대해서 국외업무여비의 전용 후 반복적 불용 발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가 있었고 그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향후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불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승환 위원 차관님,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개선에 대해서 저는 제도개선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예산은 어떻게 반영돼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올해 예산은, 26년도는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돼 있고요.

위원님, 설명을 좀 올리자면……

○조승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전례 답습적으로 예산편성을 계속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예요. 제도개선을 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이것을 제대로, 소액 예산이고 크게 관심 없는 사업비 예산이 아니라 그래 가지고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른 사업에서 전용해 가지고서 또 전용한 것도 제대로 못 쓰고 불용하고…… 이것은 이게 답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농림부에서 이거 분명히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전용해서 불용하는 게 도대체 어딴어요?

저는 제도개선 정도로……

○소위원장 강승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조승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해서 제도개선으로 낮추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연번 7번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빈집 등록·거래 관련 사업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가 있었고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내실 있게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승환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빈집 특별법 만들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농어촌 이 빈집 특별법하고 국토부에서 만든 특별법하고 차이에 대해서

차관, 알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첫째, 지역을 다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아니, 지역뿐만 아니라 법적 구성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농림부의 빈집 특별법 부분은 사실 알맹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이거 집행도 안 되고 실집행률 2.7%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냥 걸치레로, 명분 쌓기용으로 사업 진행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국토부 법하고 과연 이게 우리가 농어촌·농업인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런 사업들을 농림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것을 할 의지나 능력이나 제도나 이런 측면에서 완비가 돼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허울 좋게 그냥 농업인을 위한다 이런 명분만 가지고 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아예 버릴 것 같으면 버리고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고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다른 위원님.

○**김용태 위원**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실집행률이 2.7%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이 사업은 농어촌 빈집의 거래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한테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게 하는 사업인데요. 첫 번째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부모님이 보통 물려주신 집인데 그 집을 매물로 등록하는 것 자체를 좀 꺼려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빈집으로 방치할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 이 항목만도 문제이지만 저도 조승환 위원님의 의견에 상당수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빈집 정책을 지금 국토부하고 농림부가 하는데 농림부에서가 훨씬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왜? 농촌지역에 빈집이 많기 때문에. 국토부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지만 지금 빈집이 주로 농어촌 지역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농림부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정책도 제가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현장에서 있어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사실 별로 필요성이 없는 사업인데 하니까 결국 2.7%밖에 안 되고 부동산중개인들, 부모님 집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빈집을 정리할 수 있는,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 될까? 저는 이것 계속 유지할 건지도, 시작한 거니까 지금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도개선·시정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고요.

조승환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빈집 정책 이것 말고 다른 알맹이가 있는 부분도 조승환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알맹이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가 제대로 들여다보고 국토부나 아니면 실질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빈집을…… 빈집 정책이 사실상 지금 거의 안 되잖아요. 아까 부모 또는 그 자녀들의 동의 여부,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 저도 법안에 대해서 지금 법안을 제기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송옥주 위원 먼저 하세요.

○문금주 위원 문금주 위원입니다.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저도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만 빈집 정리하기 정말 힘들어요. 저도 뭐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도 제 스스로가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적을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농어촌의 빈집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제안도 받아 보시고 아이디어 모집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고, 이게 어렵다는 건 압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제도개선으로 그냥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이재관 위원님.

○송옥주 위원 아니, 제가 먼저 들어서 짧게……

○소위원장 강승규 예, 송옥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 길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5년에 신규 편성되었고 올해도 이 예산이 반영돼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내년 사업에도 혹시 반영이 되어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감액되어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렇습니다. 감액돼서……

이 목적과 취지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농어촌지역의 빈집 정비하는 사업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작년에 도입해서 집행률이나 그런 게 낮은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 이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정책이어서 바로 시정조치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는 약간 어렵다는 생각이구요. 추진을 해 보고 또 보완도 하고 제도개선을 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현실적인 부분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그러면 그때 시정조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에 같은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결국 농림부 사업과 국토부 사업이 현장에서 자치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지역 현장에 가면 집행부서 간에 같은 취지의 일들이 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분리돼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을 부처가 공동으로 한번 같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부처의 칸막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빈집을 어떻게 철거 그다음에 등록 이런 일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때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토부·농림부·해수부가 같이 협의체는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소상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이 부분도 일단 빈집 정책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6페이지 연번 19번입니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집행 상황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이월 발생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가 2개 있는데 아래 동그라미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위에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이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부처 의견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정부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2쪽 연번 30번입니다.

식품외식종합자금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식품가공원료 매입 사업의 이월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부처 의견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집행률이 되게 낮잖아요. 외식식품가공원료 매입 사업 내역사업에 증액을 했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집행한 것은 46%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이월이 된 건데 이게 현장에서 이것을 받아 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이 사업비를 쓰고자 하는 민간에서 실제로 이 자금을 쓰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게 어떤 허들이 있었던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가장 큰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은 업체의 담보 부족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작업하면서 대출 준비기간이 부족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담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식품가공업체가 영세하다는 말 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영세하지만 이후에 안정적으로 가공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대출 실행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걸 거쳐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준비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이 발생했는데 다만 다음 해 26년도에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25년도에는 이월이 된 거고 그러면 26년도에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거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전액 집행 완료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다른 위원님들.

○조승환 위원 넘긴 돈을 전액 집행 완료했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이월한 돈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이월한 돈을 전액……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했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조승환 위원 그걸 지금 아주 집행을 다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승환 위원 그러면 현재 이월된 돈의 현액은,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얼마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26년도 것은 제가 지금……

○조승환 위원 아니, 26년도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산현액 대비 얼마냐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예산현액 대비 한 50% 정도, 현 기준으로 오늘……

○조승환 위원 그러면 이월액 대비, 금년도 이월한 건 전액 집행했고 지금 금년도 예산은 얼마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1433억인데 현재 집행·실행을 761억 했습니다, 위원님.

○조승환 위원 이번에는 이월 안 시켜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

○조승환 위원 확실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반복적 이월이 안 되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위원님.

○소위원장 강승규 제가 지적을 해 볼게요.

식품가공업도 그렇고 제가 이따 스마트 축산에서도 할 얘기인데 농림부가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아까 임미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증능력이 없다. 보증능력이 당연히 부족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쌀이든 뭐든

다양한 농산물 원자재가 남아돌아 가고 있는데 이것을 가공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공업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원을 하는데 담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어찌고저찌고 해 가지고 실제 이런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들이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50% 정도나 이월한다, 이게 농림부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제가 이따 스마트축사도 지적하겠지만 스마트축사를 지원하는데 담보를 최대 30억까지 묶어 뒀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스마트시설을 하려면 적어도 60억, 1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떡하나? 정부가 보증해서 30억 내서 한 20억 정도, 겨우 융자 2% 받고 나머지는 캐피탈 이런 데서 6%, 7% 받는데 그게 다 현대판 노예처럼 사내이사가 보증을 선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마트 전환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적어도 사내이사가 보증이라도 서려면 엄청난 거래를 해서 신용을 쌓지 않으면 해 주지 않는대요. 그러니까 전환이 안 돼요. 보니까 스마트축사 예산도 다 남아돌아 가더라고요.

아니, 예산은 만들어 놓고 농림부가 기준을 현장에 맞추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 시정해야 된다고 봐요. 어떠세요? 시정 받아 주시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는데 저희들이 추경예산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좀 늦어진 부분이고요.

○**소위원장 강승규** 오케이.

하여튼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 그게 그냥 이월해 가지고 집행 다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더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강승규** 예.

○**임미애 위원** 조승환 위원님 하셔 가지고.

이것 주로 어떤 원료를 매입하는 데 집행이 되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국산 가공품 사용하는 원료는 다 사용할 수……

○**임미애 위원** 모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 자금이 주로 지출된 원료가 뭐냐는 거지요. 예를 들면 배추냐 아니면 양파냐 아니면 사과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주로 어떤 원료였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것까지는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 정경석** 위원님, 그건 그냥 우리 원료 농산물을 다 구매한 거라서 그 부분은…… 받아 간 가공업체들 해서 원료는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품목에 제한은 없는데 주로 어떤 품목에 가공을 하겠다고 업체들이 자금 신청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싶고요.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 정경석** 예.

○**임미애 위원**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실제로 가공을 하고자 하는 산업 그리고 또 정부부처가 그것을 육성해야 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담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료를 매입하는 데 이렇게 제한을 겪고 있다면 가공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최근에 본 신문에 보면 여름배추가 작황 면적도 굉장히 줄었지만 가격도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에 봄배추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김치를 담그겠다고 창고에 넣어 놔던 배추를 지금 경매장에 출하를 하고 있어요. 여름배추 작황지는 완전히 아작이 난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보면 외식업에서 수입 김치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소비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농식품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후에 원료를 생산하는 생산단지의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문제와 동시에 소비 형태에 맞도록 가공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첫 단계인 원료 매입에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그 이유가 담보 능력 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소규모의 가공업체들, 혹은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규모가 좀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담보 능력을 제공할 수 없었던 가공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애초에 잃어버리는 건데 그러면 그 담보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준치를 좀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소비 형태에 맞는 가공산업의 활성화로 이 사업이 연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개선 이것보다는, 이게 사실은 다른 여러 산업에서도 겹치는 거여서 강승규 위원이 지적한 대로 주의 조치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우선 다른 배석자께서 얘기할 때는 직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임미애 위원님 의견이 구구절절이 옳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결산을 하는 이유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제도를 뭔가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그냥 계속 제도개선, 약간의 경고 조치만 하시면 계속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 따끔하게 받아들이시고……

정말 보증 한도 없이, 보증 능력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식품회사 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보증 여력이 없다고 대출을 이렇게 안 하고 예산 집행률이 50%로 떨어지는 것은 농림부가 다시 각성해야 되는 거 아니가요? 주의 받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다만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주의 부분은, 위법 혹은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의를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 안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예.

○임미애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3쪽입니다.

연번 31번 전략작물산업화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과도한 홍보비 집행에 대해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가 있었고 그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승환 위원 차관님, 내가 구체적으로 예산 내역을 뜯어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식량작물선도경영체육성 사업에 원래 홍보비 예산이 편성돼 있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정혜련 식량정책관입니다.

지금 전락작물가공확대지원 사업에서, 46억 8700만 원 있던 것 중에서 식량작물선도경영체육성으로 내역변경 해서 했습니다. 식량작물선도경영체육성 사업 안에 교육·홍보 항목이 있었습니다.

○조승환 위원 얼마가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정혜련 당초 25년에는 2억 원이었습니다.

○조승환 위원 내역변경을 얼마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정혜련 내역변경을 46억 87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내역변경이에요, 전용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정혜련 전용을 했습니다.

○조승환 위원 국장님, 내역변경과 전용이 뭔지는 알지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정혜련 예.

○조승환 위원 알지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정혜련 예, 저희가 전용으로 했습니다.

○조승환 위원 전용으로 한 거네? 사업비 예산을 홍보비 예산으로 전용한다는 게 이게 일종의 뭐지요? 사업비를 기관운영 쪽 일반예산으로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역인데 이것은 차관이 이야기한 대로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주의를 받아야지.

나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국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라고 봐요. 사업비 예산을 홍보비 예산으로 돌린 것 자체도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고 내역변경이 아니라 전용 절차를 밟았겠지만 엄연히 전용이고. 국민한테 돌아가야 되는 사업의 예산을 어떤 홍보를 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로, 2억짜리 사업을 46억으로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부당한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주의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장이 얘기한 것은 전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니까 사업 내부에서 내역변경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내역사업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두드려 보면 아는 것이고 시간 끌기 싫으니까…… 어떻게 됐든 이것은, 내가 위법하다는 이야기까지는 주장을 안 하겠는데 주의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주의도 상당히 많이 약하게 한 것 같은데.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강승규 예,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 이렇게 내역변경 해서 집행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그전에 교육·홍보비로 책정되어 있던 게 2억인데 내역변경 한 게 46억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변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방송이나 인플루언서 홍보에 편당 또는 건당 1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지출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전액 다 그런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25년도에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때 저희들이 전략 작물직불을 처음 도입하고 소비 촉진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했기 때문에 개발된 제품들에 대해서 판촉하는 데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런데 지금 조승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당초 예산편성에서 홍보비 등으로 책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지원 예산에 그런 내역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무려 46억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홍보할 때 46억 정도를 예산편성하거나 이런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저도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아무리 전략작물, 가루쌀이든지 콩이든지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것이 정확히 홍보비로 책정이 돼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26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홍보비를 별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강승규 이것은 주의 받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연번 32번입니다. 전략작물산업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국가콩가공단지의 사업 관리 철저 및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부처 의견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주의에서 제도변경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강승규 예,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미애 위원 25년도에 신규 도입됐지만 이것 연차 사업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몇 년 차 사업인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3년 사업입니다.

○임미애 위원 3년 차 사업인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3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실집행률이 25%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의 부지 확보나 지역에서의 사업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26년도에 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정혜련 지금 현재까지……

○임미애 위원 마이크 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정혜련 죄송합니다.

식량정책관 정혜련입니다.

현재까지 예산의 50% 정도 집행되고 있고 시행 첫……

○임미애 위원 신규 사업 포함인가요, 아니면 25년도 선정된 사업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정혜련 이월된 사업 자체는 지금까지 한 85% 정도 집행이 돼 있는……

○임미애 위원 이월 사업은 85%.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정혜련 예.

그다음에 올해 26년 예산 중에서는 반 이상이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혹시 사업을 신청했다가 반납한 사례가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정혜련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정혜련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은 연차 사업이어서 주의가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대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중앙에서 연차사업으로 집행을 할 때요 예산을 한꺼번에 내려보내서 중앙정부의 부담을 떨어 버리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연차사업이면 연차사업에 맞게 지역에서 집행할 수 있는 만큼만 내려보내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위원님 현실 반영해서 연부율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이것은 저도 제도개선으로 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5쪽입니다.

연번 34번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연례적 전용 방지를 위한 정부양곡 조작권리비 예산 현실화 및 예산 편성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부처 의견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이것은 한두 번 해 본 게 아닌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일이 년 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 과정에서 충실하게 못 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올해 예산 단가는 조정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못 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면 또 계속 이렇게 가겠다는 거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도 위원님 지적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조정……

○조승환 위원 지적도 당연하고 반복적으로 전용하는 것도 당연하고 다 당연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게 단지 그냥 예산 당국의 책임으로만 갈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자극적인 조치가, 예산 당국에도 들어갈 수 있는 자극적인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강승규 이것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30쪽입니다.

연번 40번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축사시설 개선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부처 의견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변경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이것은 왜 변경요청을 하시는지 부처의 의견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시군에서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간에서, 일단 정부사업 신청을 한 이후에 인허가 과정에서 포기를 한다든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이나 불용, 사업포기 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제도개선을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농가들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집행률이 개선되고 있다

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강승규 예, 말씀하시지요.

○임미애 위원 이것 주로 어느 시설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전체적으로 다 해당됩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한우면 한우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양돈……

○임미애 위원 주로 양돈농가인가요? 아닌가요? 양돈인가요, 아니면 산란계나 양계나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이재식 축산정책관 이재식입니다.

이 자금으로는 모든 축정이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임미애 위원 주로 어디가 이용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이재식 지금 개소 수로 보면 아무래도 한우농가들이 많은 편이고요.

○임미애 위원 한우농가들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이재식 예. 그렇지만 양돈, 산란계, 육계 다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산란계 농가가 시설 현대화사업 내지는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사육 면적 늘린 것에 혹시 이 사업비 신청한 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이재식 그건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내역 주시고요.

이것 예비수요 조사하지 않나요? 예비수요 조사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건데 아마 사업하다가 보면 지역의 민원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절반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실집행률하고 다 합치면 31%밖에 안 돼요. 이러면 예비수요조사가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자체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과정이 거처지지 않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아 보니까…… 예를 들어 경북에 100억을 배정하고 충남에 100억을 배정했는데 경북은 제반여건이 다 충족되는 사업을 신청해서 100억이 다 집행이 되고 충남은 그런 조사 없이 하다 보니까 집행이 충분히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제도개선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냐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러니까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협회라든가 지자체를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고 사업이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농가에게 직접 사업비를……

○임미애 위원 그러면 농림부에서 현장 나가시나요? 농식품부에서 현장 나가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이재식 저희가 일단 먼저 서류조사를 하고요. 서류에서 보

면 인허가 상황 같은 것들은 증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먼저 점검해서 1차 거르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까지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은 사실은 집행률을 높이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지자체가 신청을 할 때 책임감 가지고 이게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사전조사를 한 후에 신청을 하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그냥…… 보통 저희도 현장에서 보면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다 신청해요. 그게 예비수요로 잡히는 거고 그렇게 잡혀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로 집행률이 떨어지면, 원래대로 하면 그 예산이 다른 곳에 편성이 되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뺏아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비수요조사를 하실 때 지자체하고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실질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예비수요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축사시설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집행률이 매우 낮다는 게 계속 있었던 문제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래서 이번에 26년도부터는 확실히 제도개선하고 또 추가적인 사항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차관님, 이것 신규 축사시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축사시설 개선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기존 축사 개선하는 겁니다.

○문금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죄송합니다, 위원님. 신규도 가능합니다.

○문금주 위원 기존 축사를 하게 되면 인허가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기존 축사……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이재식 축산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들을 지자체에서 정하고 있는데 증개축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횡수를 제한한다거나 면적을 제한한다거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는 허가를 잘 안 해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래도 악취 민원 이런 것 있으면 지자체에서는 현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을 텐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이재식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축사시설 현대화를 하면 훨씬 더 악취도 저감되고 하는 효과가 있는데 당장에 그것을 인허가하면 그 지역에서 사실 민원이 또 발생……

○문금주 위원 인센티브를 좀 주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이재식 예, 관련해서 저희가 제도개선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자, 제가 지금 종합해서 정리하는데요.

이것 제가 오늘은 그냥 딱 정리만 해 주고, 제가 이것 문제 제기 계속 하고 있는 것 알지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이재식 예.

○소위원장 강승규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 때든지 상임위에서 제가 다시 질의할 테니까 그때 답을 주세요.

지금 문금주 위원님이 의문을 갖고 임미애 위원님이 한 것 다 종합해서 이렇게 드릴게요.

지금 농림부에서 기존 축사를 개선하거나 신설하거나 할 때 그것을 지자체에다 위임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양돈 같은 경우 특히 냄새라든가 분뇨,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군에서는 현대화를 하든 스마트축산을 하든 증설을 아예 막아 놓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10%, 20% 증설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낼 때는 굉장히 제약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화나 스마트화가 안 돼.

그런데 농림부에서, 아까 제가 했지만 예산에 호은농장이라고 있어요. 3000㎡에 자돈 9000두를…… 하여튼 9000두를 사육하는데 현대화 시설에 22억밖에 못 받고 나머지 다 캐피털 자금으로 해서 거기에 돌려 있다는 것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일반농장은 스마트화하려고 하더라도 시설자금을 정부에서 스마트축산 지원도 이렇게 남아도는데도 담보 능력 부족으로 안 해 준대. 그래서 못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첫째,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기 현장 방문해 가지고 증설을 안 하더라도, 지자체에서는 다른 일반주민들이 워낙 민원이 세기 때문에 증설 요만큼도 해 줄 생각이 없어요. 홍성군 같은 경우 홍성군에서는 조례로 아예 막아 놔서, 축산군인데도. 왜? 냄새 이런 일반민원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부가 일단 기존 농장을 스마트화할 때는 무조건 시설을 다 전액, 아파트의 PF자금처럼 다 용자를 저리로 해 주세요. 그러면 청년농들이 다 할 수 있대. 실제 증설을 안 해도 그게 가능하대요. 그런데 정부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지자체에다가 맡겨 놓고 지자체가 신청하라고 하면 지자체는 민원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화나 현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용자제도를 개선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야 이게 집행률이 높아지지 지자체에 묶어 놓으면 지자체에서는 이리저리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다……

제가 자세한 건 나중에 자료로 다 드리고 질의를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32쪽입니다.

연번 42번입니다. 비축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이 낮은 사업 추진 문제 및 시장 여건에 맞는 제도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33쪽, 연번 43번입니다.

동일하게 비축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강승규 위원께서 국회 심의권을 훼손하는 사업변경 남용을 방지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농림부 마지막입니다.

44페이지, 부대의견입니다.

연번 8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사행성 우려가 크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 별도로 규제 완화하는 경우에는 지난 2016년도에 워커히호텔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화상경마장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규제 완화 부분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취지를 고려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으로 변경해 주시면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다시 한번만 전체적으로 읽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사행성 우려가 크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까지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태 위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면 정부 측 의견 수용해서 수정하겠습니다.

그 전에 43쪽, 말 예방백신 수요 사전 검토 및 재고 관련해서 제가 주의 의견을 내서 정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 백신이나 이런 부분이 질병 등에 대해서 사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주의 요구한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리고 혹시 위원장님, 의견 주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하나 고려해야 될 게 6쪽의 5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입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현재 관련 사업이 없으므로 제도개선 대신에 부대의견으로 변경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대로 부대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심사 내용에 대해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의 자구 조정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농촌진흥청 관계직원들 참석하시는 대로……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와 동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지금 손님이 와서 한 15분 정도 잠시 이석하는 관계로 사회는 문금주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게 제일 많은데 의견을 주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께서 정리해 주세요.

(강승규 소위원장, 문금주 위원과 사회교대)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잠시 제가 사회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소위 심사자료 2권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입니다.

8쪽입니다.

연번 7번입니다.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부지취득 선행절차의 진척을 반영한 건설보상비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습니다.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지금 위원님들이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의견 주셨는데요 이 부분 시정요구에 부합한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김용태 위원 질문 하나만……

24·25·26년도 다 집행을 안 한 건가요?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토지보상비 쪽의 집행이……

○김용태 위원 집행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계획이 조금씩 바뀌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용태 위원 혹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담당 국장이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기획조정관 이상호 기획조정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속채소연구소 부지 안의 농수관로라든가 농지 전용 문제가 있어서 협의가 좀 지연되면서 집행이 전부 안 된 건 아니고 일부 지연이 되면서 불용이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러면 지금은 해결됐나요?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예, 올해 예산집행은 지금 96.4%가 됐습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9페이지, 연번 8번입니다.

파속채소연구소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 지연에 따른 대규모 불용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본건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미준수로 인해 가지고 기획처의—당시 기재부입니다—조치에 따라서 기본경비 2억 3100만 원을 불용한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청장님 지금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의 연번 8번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8번을 제가 잘못 본 모양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청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그러면 지금 8번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속채소연구소 구축 사업에 대해서 2023년 80.7%, 2024년 73.2%, 2025년에 54%로 집행률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이 집행을 저조한 것에 대해서 지금 주의와 제도개선을 주셨

는데 올해 집행률도 96.4%로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10페이지, 연번 9번입니다.

축산과학원 기본경비에 대해서 지적이 있습니다.

축산과학원 기본경비의 계획변경 등에 따른 예산 불용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 지적 내용에 대해서 부처 간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본건은 자개부 이전 관련된 건데요, 본건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미준수로 인해 가지고 기획예산처의 재정적 제재 조치에 의해서 2025년 기본경비를 축산원 쪽에서 2억 3000만 원 불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 한 번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이중 제재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은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지금 동 건과 관련해서 내용이 종축장 이전에 관련된 내용이지요?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맞습니다.

○이재관 위원 지금 제재를 받은 부분은 예산 불용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걸로 제재를 받으신 거잖아요.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그러니까 자개부 이전에 대해서 총사업비 집행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제재를 한 건데 그때 그것을 축산과학원의 기본경비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확정된 시기가 그해 11월 28일입니다. 국회 단계에서도 거의 예산이 확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그때 기획예산처하고 얘기해서 그러면 불용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한 번 제재를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재관 위원 이 사업은 충남에서 전남 함평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현재 함평군과의 실시설계인가라든지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농진청의 사유뿐만이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하고의 협의 진전에 따라서 사업 이행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예, 맞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전 작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한 번 제재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또 하게 된다면 이전하는 비용 자체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측 의견을 좀 수용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같으신가요?

○조승환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지금 축산과학원이 책임운영기관이지요?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예.

○조승환 위원 책임운영기관인데 함평 이전과 관련된 사업이 총사업비로 묶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예, 맞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런데 그 총사업비가 집행이 안 된 겁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예, 그게 집행이 좀 부진했던 사업……

○조승환 위원 총사업비 협의가 잘 안 된 거네요?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예.

○조승환 위원 그래서 페널티는 기본경비를 잘랐나?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예, 책임운영기관의 기본경비를……

○조승환 위원 기본경비를 잘랐나, 이해가 되네요.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이 부분은 빼는 걸로?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마지막입니다.

11페이지, 연번 10번입니다.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에 대해서 연례적 집행 부진 및 회계연도 말 대규모 전용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유형으로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 세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위원님들이 세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시정요구 내용에 부합하는 주의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대로 주의로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이것으로 농촌진흥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내용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촌진흥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의 자구 조정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위원님들께서는 산림청장 및 관계직원들이 착석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종** 전문위원입니다.

산림청 결산에 대해서는 총 6건에 대한 부처 이견이 있었습니다.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목재생산관리에서 친환경 목재생산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적정한 예산 규모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박은식** 지적하신 취지에는 공감하고 시정하겠습니다마는 친환경 목재생산 사업이 목재생산이 위축되면서 일시적으로 사업이 좀 부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시정을 주의로 완화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 개선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대로 시정을 주의로 완화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종**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연번 12번입니다.

지특회계 임도시설의 사업에서 임도시설 사업의 수익계약 개선과 계약관리 및 현장점검 강화 필요에 대하여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박은식**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임도 사업의 공개경쟁 비율을 올해 같은 경우 7월까지 저희가 38%까지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공개경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종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연번 17번입니다.

일반회계 산림휴양등산증진 사업에서 공립밀양산림레포츠센터 조성 사업의 보조금 교부지침 위반 및 전액 환수에 대한 철저한 정산관리 필요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박은식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밀양시 등 관련된 지방정부와 협의해서 이미 고지를 하였고요. 전액 반환하는 걸로 고지를 하였고, 10월 중에 국고로 반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의로 완해 주시면 저희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 이거는 왜 미집행된 거예요, 밀양에서는?

○산림청장 박은식 밀양에서 지방비 편성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실 국비를 지원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랐었는데 지방정부하고 지방의회에서 의견들이 좀……

○김용태 위원 매칭사업이었다는 거지요?

○산림청장 박은식 예.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매칭이 얼마나 돼요?

○산림청장 박은식 50%입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대로 주의로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종 20페이지입니다. 연번 23번입니다.

일반회계 산불방지대책에서 사전검토 미흡에 따른 추정편성 예산의 집행부진 개선 필요에 대하여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박은식 위원님들께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시면 저희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고정익항공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군과 또 해외 제작사와의 의사소통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들은 철저히 기해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 부분도 정부 측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종 21페이지입니다. 바로 뒷장입니다.

일반회계 산불방지대책에서 추경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부적절 및 집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의 추경편성 지양에 관한 것에 대해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박은식 위원님께서 시정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드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드론을 배제하다 보니까 드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과 더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에 공감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정을 주의로 완화해 주시면 저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부분 정부 측 의견대로 주의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종 23페이지입니다. 연번 26번입니다.

일반회계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에서 불요불급한 산불진화헬기 임차 예산 추경편성 지양에 대하여 주의 또는 제도개선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림청장 박은식 위원님들께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요구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공감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했었고 올해부터는 해당 회계연도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을 반영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이현종 여섯 가지 다 보고드렸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부처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이것으로 산림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림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의 자구 조정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산림청장 박은식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위원님들께서는 해양수산부차관 및 관계 직원들이 착석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민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해양관광육성 관련해서 해양관광인프라 조성사업 실집행이 부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 택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해양관광육성 사업, 6번 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도 실집행률이 33.7%로 부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상휘 위원님이 주의를 요구하셨고 강승규 위원장님과 김선교·이성권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본사업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 중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 이후에 예산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 절차를 작년에 회계 변경을 일반에서 지특회계로 이미 변경을 하였고 금년 6월 달에는 해양관광 SOC 사업 시행지침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점검 협의제도 저희가 지자체와 구성을 해서 매년 집행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 25년도 추경은 집행률이 0%인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본예산의 집행률이 삼사십%대인 것 같은데 지자체의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이게 당초 일반회계로 배정되면서 지자체에 예산을 내려 준 다음에…… 지자체에서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가 1000억 원 그다음에 지자체가 1000억 원, 그다음에 해양레저관광거점의 경우도 400억 원, 400억 원 수준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데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도 변경을 해서 지특으로 바꾸고 예산 반영할 때도 관련 절차들, 예를 들면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관련된 절차들이 이행되어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민 12페이지입니다.

교특회계 마리나 항만입니다. 연번 10번입니다.

마리나 항만 사업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주의와 제도 개선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서삼석 위원장님께서 주의 그다음에 임미애 위원님은 제도 개선으로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개별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여수웅천마리나 사업의 경우는 최근에 여수 지역의 석유 화학 산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방 재정이 상당히 어려웠고 그리고 금년에 선박람회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방 재정에서 사업비 투입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에 이미 여수시와 협약서 2건을 진구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번에 새롭게 지자체장이 선임된 다음에 저희들이 별도로 지자체장과 면담을 통해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약속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방아머리의 경우는 지자체의 사유라기보다는 국토부에서 시화호와 관련된 안전 문제 그리고 교통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 부와 안산시 그리고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건은 이미 해결을 했고요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부락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완화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민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연번 6번입니다.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주의와 제도 개선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알겠습니다. 6번,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는 임미애 위원님께서 주의 그리고 강승규 위원장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강승규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 옥계·사천이라고 되어 있는 건축 사업이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사천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고 옥계의 경우가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옥계 시설의 경우는 강릉의 도시관리계획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약 6개월 정도 사업이 지연됐습니다만 25년 12월에 저희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으로 저희가 부락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승환 위원 부처 의견 납득이 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윤성민 22페이지입니다.

농특회계 수산식품산업육성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김 건조기 교체 사업 사전준비가 미흡했고, 그다음에 사업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제안되었습니다. 부처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부처 의견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알겠습니다. 동 사업은 다수 위원님께서 주의를 요구하셨고, 안정적인 마른 김 수급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고려해서 강승규·김선교·이성권·이상희 위원님 요구대로 주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드릴 부분이 2025년도 추경이 7월 달에 편성되면서 지방비 추경예산 확보가 그해 11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25년도 예산 소진 자체가 어려웠던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의 정도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문금주 위원 문금주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또 저희 지역구가 해당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마는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일단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는……

○문금주 위원 자부담이 좀 많이 있나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사업자 선정 이후에 히트펌프 등 설치를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20개 사업자를 선정했는데도 불구하고 2개 사업자가 포기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 지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8개 사업자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지금 마른김과 관련된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금주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사업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어떻게 만전을 기하실 생각이십니까?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자부담률을 좀 낮춰 주든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맞습니다.

일단 27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요구하지는 않았습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갔기 때문에 마무리 잘하도록 하고요. 추가 수요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문금주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 안 세웠어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문금주 위원 환장하겠네.

○소위원장 강승규 왜 반영 안 하셨어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일단 사업 집행을 부분이, 실집행률이 2026년 지금 현재 약

10%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까지……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니까 마른김이 지금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수급이 불안정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저희 지역구도 지금 마른김이 없어서 김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완성품 만들다 보니까 마른김 확보 때문에 난리인데 이 예산 책정해 준 것도 집행률이 10%라고 그러고 내년에는 또 사업예산을, 지금 문금주 위원님 한탄하듯이 내년 사업예산도 편성 안 하면 그러면 마른김은 전쟁이 계속되겠네요, 해수부의 관리 소홀로?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저희가 마른김 18개 사업 자체의 완료되는 시기가 2027년 10월 달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계화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봤고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국회에서 제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가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이 사업을 보니까, 제가 내용을 좀 들여다봤어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김 생산이 대략 언제 되지요?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한다고 보면 추경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한 게, 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장비를 어떻게 교체하나요?

예산편성 단계부터 해수부가 전혀 계획적이지 못하고 추경 돈 나온다니까, 추경 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갖다가 마른김 사업으로 해서 실제 하려고 보니까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사업을 안 한대. 그러면 이 사업은 필요가 없던 사업을 한 거네요.

내년에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초반기에 집행을 해서 마른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는 거지요.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 얼마 쓰라고 그러니까 쓴 거고 그것 지금 헉헉대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제 지적이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위원장님 지적이 상당 부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마른김 생산해야 되는 시기에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까 예산 반영도 좀 어려웠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 일정도 상당히 늦어진 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 2027년 10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서 하고요.

○소위원장 강승규 이것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게 되니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일단 주의 조치 수용하고.

마른김 등 김 생산 관련해서, 물김부터 시작해서 마른김 어찌고저찌고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문금주 위원님은 생산지에서 또 저는 광천 등의 완성품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 나중에 상임위 차원이든지 어디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시지요.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이 사업은 건조기 교체 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의 집행률 그것도 중요하

지만 실질적으로 김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아닌가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맞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차관님께서 대응하시는 게 되게 미온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적이 됐을 때 재정 부서에서, 예산 당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부정적이라고 하면 예산 편성을 확장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사실 저희가 정부안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재관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주의·제도개선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앞으로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정부에서, 저는 주의를 그다음에 김용태 위원님께서도 제도개선을 지적하신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저는 정부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예산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주의보다 제도개선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이재관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사업이 정부가 하고 싶지 않은 것 억지로 떠안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아닙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이것은 제 요청이 아니라 문금주 위원님 요청입니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윤성민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농특회계 수급 위기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연번 5번입니다.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의 특정 프랜차이즈 기반 직매장 지원 방식으로 된 게 타당성이 있느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주의와 제도개선 2건이 있었습니다. 부처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부처 의견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5번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지원 사업은 강승규 위원장님께서 주의, 문금주·임미애·이재관 위원님이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집행률 제고,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절차의 신뢰도 제고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저희가 공모 요건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자·생산자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금주·임미애·이재관 위원님 요구대로 제도개선으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성민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농특회계 수산장비 활용입니다.

연번 8번입니다.

수산장비 활용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주의와 제도개선 2개가 제안됐습니다. 부처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부처 의견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8번 사항은 수산장비(임대) 활용 사업 전반의 집행 부진에 대해서 김용태·이상휘 위원님이 주의, 강승규·송옥주·임미애 위원님이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고 수산양식기자재클러스터 사업 성과지표 개선 등에 대해서는 이상휘 위원님께서 별도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도개선으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용태 위원 3년간 실집행률이 저조한 1.9%밖에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나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사업을 2건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남에서 추진하였던 클러스터 사업의 경우는 당초 23년도에 공모 참여한 다음에 군의회 결정으로 25년도 10월 달에 포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전액 환수조치를 이미 금년 4월 달에 완료를 했고요.

다만 부산에서 하고 있는 기자재 인증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는, 지자체 사업의 경우에 사전 절차인 지방투자심사 같은 경우 일정 등이 지연되다 보니까 27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관련 절차들이 대부분 완료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조금 늦어지기는 하지만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제가 사실 농해수위가 처음이다 보니까 제 주관적인 생각인가 모르겠는데 해수부는 지자체가 포기하는 사업이 많나요? 조금 전 사업도 그렇고 처음에 신청해봤다가 지자체가 스스로 포기하거나 하는 매칭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서 많은 건가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대부분은, 지자체에서 교부금을 낸 다음에 실제로 예산 투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들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그런 사전 절차가 완료되어야 예산이 투입되도록 제도개선을 하였고요.

이번에 완도의 경우는 군의회에서 의사결정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업 포기를 하였고 저희가 관련 법 규정 절차에 따라서 환수까지도 완료한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윤성민 51페이지입니다.

농특회계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입니다.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이 정보화전략계획(ISP) 미수립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지연된 점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의와 제도개선 2개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부처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부처 의견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4번 스마트 양식 빅데이터 구축사업의 경우는 사전 행정절차인 정보화전략계획(ISP) 자체가 수립이 되지 않고 사업이 당초에 추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의 착오가 분명히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상희 위원님이 주의, 김용태 위원님이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다만 현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이 이미 2025년 7월 달에 완료가 되었고 12월 달에 착공이 되어서 27년 상반기까지 사업 준공이 예정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 등의 미비는 있었습니다만 제도개선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앞의 3번 부분이 관련이 되는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3번?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앞 페이지입니다.

전체 사업 자체가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내의 내역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 외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6개 중에 제주도만 어민들 간의 협의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품종별산업화 시설 지원이 참조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영광군에서 민자사업자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 이 사업이 이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제도개선 취지에 맞춰 가지고, 3번도 위원장님께서도 시정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같이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수용하셨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또……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4번이 방금 제도개선으로 바뀌다 보니까 3번도 연계가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주의·제도개선, 여기는 제도개선……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시지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성민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지특회계 어촌신활력 증진입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의 집행 제고 방안 마련 및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주의와 제도개선이 제안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부처 의견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어촌신활력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해서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이상희 위원님께서서는 주의 그리고 강승규·김용태 위원께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연례적인 집행 부진에 대해서 2026년도 초에 사업 지침을 개정하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9월 달에 사업구조 개편 및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서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침하고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촌신활력 사업 외에도 현재 지금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 3.0에도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였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부락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승환 위원** 차관님, 이게 지금 사업들을 지자체에도 주고 어촌공단에도 주고 또 농어촌공사에도 주고 그러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조승환 위원** 지금 그것의 개별적인 실적이 어때요? 어디가 제일 안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부어촌어항재생과장 홍근형** 어촌어항재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활력사업 같은 경우에 124개소인데 농어촌공사가 37개소, 어촌어항공단이 35개소 그리고 직접 수행이 52개소인데 현재 어촌어항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유보액이 많습니다.

○**조승환 위원** 어촌어항공단이 유보액이 많다?

○**해양수산부어촌어항재생과장 홍근형** 예.

○**조승환 위원** 그것은 해양수산부 책임인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해양수산부어촌어항재생과장 홍근형** 지자체가 수탁을 주는 것은 지자체에서 의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고요.

○**조승환 위원** 아니, 수탁 말고 직접 주는 것도 있잖아.

○**해양수산부어촌어항재생과장 홍근형** 직접 주는 건 없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냥 지자체에서 직접 하겠다고 가져가서 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준……

○**해양수산부어촌어항재생과장 홍근형** 예, 맞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런 형태로 완전히 가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어촌어항재생과장 홍근형** 예.

○**조승환 위원** 이 지침, 집행액 관리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이것은 장관·차관께서 직접적으로, 액수도 많은 액수고 이게 챙기는 것하고 안 챙기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사업이니까 각별히 관심 가지고 집행률 제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돼야 어촌에 돈이 들고 어촌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세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저도 여기에 의견 좀 드리는데, 우리 지역도 있잖아요. 어촌 신활력사업 하는 데 가 보면 하드웨어 중심이에요. 그리고 놀고 있어. 그렇지요? 회관 등이 놀고 있어요.

그런데 좀 프로그램이, 이 사업을 할 때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고 이것을 연

게해서 어떤…… 요즘 제 입장에서 보면 다른 농촌지역보다 어촌 그리고 어촌의 신활력 사업이 훨씬 더 경쟁력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지방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데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해요. 그냥 어항 이런 부분에 약간의 시설 개선,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좀 찾아오게 하고 거기에 뭔가 어떤 한 곳만이라도 특색 있게 시그니처 콘텐츠든 사업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이거나마 좀 해서 어촌지역에 약간의 훈기가 돈다고는 하는데 프로그램이 알차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이것 제도로 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윤성민 6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항만서비스산업 선진화 지원입니다.

시정요구는 법적 근거 마련 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부처 의견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8번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은 강승규 위원장님이 주의, 이재관·임미애 위원님이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법적 근거 마련 후 예산을 편성하고 불가피한 경우 법률안 처리 여부에 따라서 집행을 유보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재관·임미애 위원님 요구대로 제도개선으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윤성민 심사는 모두 끝났고요.

부대의견이 총 17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총 12건은 시정요구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나머지 5건에 대해서만 부대의견을 하면 될 것 같고 부처는 모두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 69페이지 4번 항목입니다. 지금 현재 제도개선으로 수용이 돼 있는 부분인데 이게 예결위 의견하고 좀 다르답니다. 그래서 예결위 의견에 맞추어서 주의로 상향을 시켜 달라라는 게 해수부 측 의견입니다. 이게 수용이 돼 있어 놓으니까 발언 기회가 없어 가지고.

○소위원장 강승규 주의로?

○조승환 위원 예.

○소위원장 강승규 제도개선을 주의로 상향해서.

그렇게 부처 의견이지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면 4번 보조금 교부·집행관리 강화 및 사업 지연 방지 필요는

주의로 정리합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것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내용에 대해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 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의 자구 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차관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종 해경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 1건, 부대의견 2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해양경찰정비창, 일반회계, 해양경찰서부정비창 신설에 대해 서부정비창 신설공사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관급자재 관리 부실에 대해서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부처 의견 주십시오.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해양경찰청 차장입니다.

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의, 제도개선의 시정요구를 제도개선으로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승환 위원 차장님, 이거 있잖아요. 이게 항상 자기네들 전공이 아닌 분야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데 이게 또 나온다고 봐요, 저는.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이걸 또 나온다고 보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우리 해 경찰청의 관급자재가 뭔지 관급자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예,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고 나오고 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문제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갈 건데 좀 특단의 대책을,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다른 기관에 맡기든지 하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동의합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 큰 공사가 있을 때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다른 위원님.

우리 해경에 조직이 얼마예요? 몇 명 정도지요?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1만 3700명 정도 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면 관급, 총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파트에 전문직이 없습니까?
다 경찰들이시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예, 저희가 큰 공사한 사람들을 뽑기는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 근무를 하지 않아 가지고요. 저희가 이런 건설에 해당되는 사람들 몇 명을 특채 하기는 했는데 서부정비창 건설에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니까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문인력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실제 거기서 예산 집행을 하고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예.

○소위원장 강승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까?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예,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이현종 16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연번 1번, 3번에 대해서 부처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의견 주십시오.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부대의견 1번과 3번에 대해서는 앞에서 심의된 사항입니다. 저희 해양경찰청에서는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정부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경찰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시정요구 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의 자구 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승규 김용태 문금주 송옥주 이재관 임미애 조승환

○청가 위원(2인)

강선우 문대립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윤성민

전문위원 이현중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구

정책기획관 홍인기

국제농식품협력관 박상호

농촌정책국장 전한영

농업정책관 윤원섭

농산업혁신정책관 이시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강동윤

식품산업정책관 정경석

동물복지정책국장직무대리 이연숙

식량정책관 정혜련

축산정책관 이재식

유통소비정책관 서준한

방역정책국장 이동식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위생연구부장 김진형

한국농수산대학교

운영지원과장 진필식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장 신현주

농촌진흥청

청장 이승돈

기획조정관 이상호

연구정책국장 방혜선

농촌지원국장 노형일

산림청

청장 박은식

기획조정관 임영석
산림산업정책국장 이상익
산림복지국장 조영희
산림복지국장 이광호
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

해양수산부

차관 남재현
정책기획관 이상호

해양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장인식
기획조정관 임명길
경비국장 임재수
구조안전국장전담직무대리 정육한
수사국장 조윤만
정보외사국장 김시범
해양오염방제국장 김한규
장비기술국장 이원재

임시회의록